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8963/0991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삼성H파트너중국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형[주식] 집합투자기구

다. 보관 • 관리기간: 2010.04.23 - 2011.04.22

라.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홍콩상하이은행

2.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 일자	변경 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0.05.03	제2조 (집합 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모 투자 신탁)	이 투자신탁은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37조 (투자 한도)	①생략 ②생략 1. 생략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신탁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 5. 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 5. 현행과 같음
	제38조 (운용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위탁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생략 ② ~ ③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위탁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0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조(투자신탁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1. 생략 2. C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0.3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6.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7 ④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1. 현행과 같음 2. C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0.3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5.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7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 (이익분배)	① ~ ② 생략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이익금이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한다.
제51조 (수익자 공시 등)	① ~ ③ 생략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통하여 직접 또는 전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 대하여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식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통하여 직접 또는 전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 대하여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식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010.06.25	제42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

		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1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정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의 잘못 계산하여 이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정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의 잘못 계산하여 이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정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 가격의 잘못 계산하여 이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

		8. 모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에 대한 통지의 수령 9.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자산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모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에 대한 통지의 수령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자산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1. 01. 17	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액면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한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A 클래스 수익증권 2. C 클래스 수익증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략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한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A 클래스 수익증권 2. C 클래스 수익증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략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한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A 클래스 수익증권 2. C 클래스 수익증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략
	제20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생략 2. C 클래스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략	제20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현행과 같음 2. C1 클래스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C2 클래스 수익증권 : C1 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4. C3 클래스 수익증권 : C2 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5. C4 클래스 수익증권 : C3 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6. C5 클래스 수익증권 : C4 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② ~ ⑤ 생략	제20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현행과 같음 2. C1 클래스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C2 클래스 수익증권 : C1 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4. C3 클래스 수익증권 : C2 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5. C4 클래스 수익증권 : C3 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6. C5 클래스 수익증권 : C4 클래스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② ~ ⑤ 생략
	제40조 (투자신탁 보수) ① ~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산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에 보수계산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	제40조 (투자신탁 보수) ① ~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산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에 보수계산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	제40조 (투자신탁 보수) ① ~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산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에 보수계산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

		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C클래스 수익증권 가. ~ 다. 생략 신설	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C1클래스 수익증권 가. ~ 다. 현행과 같음 3. C2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0.3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4.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7 4. C3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0.3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3.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7 5. C4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0.3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2.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7 6. C5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10.3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1.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7 ④ 생략
조문	신설		제53조 (수익증권의 전환)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1클래스에 한한다. 1.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2.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3.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4. C4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5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부칙	신설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한다. ⑤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도록 일괄하여 판매보수율을 인하하는 변경에 대한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201년 1월 17일)에 시행된다. 제2조(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신탁계약의 변경 시행일 이전의 C클래스 수익증권은 이 신탁계약에 의한 C1클래스 수익증권으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C1클래스 수익증권은 수익자에 의한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 보유기간에 따라 제2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이 신탁계약의 변경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예외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에 따라 수익증권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전환은 수익자에 의한 C1클래스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클래스로, 2년 이상인 경우 C3클래스로, 3년 이상인 경우 C4클래스로, 4년 이상인 경우 C5클래스로 전환한다.
--	----	----	---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해당사항없음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 ·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전				변경일	변경후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안진회계법인	1년	2,200,000 원	서면계약	-	-	-	-	-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부합함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 적정함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